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개량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92번길 1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개요 : 용인시문예회관 별관 창호공사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br>(추정금액)<br>(A =B+C+E) | 기초금액       |            |           | 관급자재     |          |
|--------------------------------|------------|------------|-----------|----------|----------|
|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79,683,000                     | 79,683,000 | 72,439,091 | 7,243,909 | 0        | 0        |

- 사. 업종별 금액 및 비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금79,683,000원** / 100%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용인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중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입찰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
| 입찰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
|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
| 개찰장소    | 용인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br>(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문화재단 시설안전팀 담당자(☎031-260-3335)

###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용인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결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567,621원

-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라.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전자견적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1인이 다른 입찰자의 인증수단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정산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br>보험료 | 국민연금<br>보험료 | 노인장기<br>요양보험료 | 산업안전<br>보건관리비 | 퇴직<br>공제부금 | 합계<br>(A값) |
|-------------|-------------|---------------|---------------|------------|------------|
| 0           | 0           | 0             | 1,567,621     | 0          | 1,567,621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법정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참가자는 「계약예규」에 따른 청렴계약 조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이미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하도급 관련사항

---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 무 위반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14. 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안내

---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 기타사항

---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31-260-3326)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팀 (☎031-260-33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문화재단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리경영팀 (감사관실 ☎031-260-3392)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

2026. 9. 21.

**(재)용인문화재단 재무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연락처 | 주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